

1. 개정이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여성 인력개발기관 등 기관이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경력 단절 예방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전면 개정(법률 제18549호, 2021. 12. 7. 공포, 2022. 6. 8. 시행)됨에 따라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내용과 여성 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사업 수행기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및 위임 근거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내용(제2조)

여성의 취업 실태, 근로조건, 근로환경 및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 교육훈련 실태, 경제활동 참여 욕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나.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공동 지원사업의 실시기관 규정(제3조)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와 개발 상담, 경력단절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00. ~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내용) 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의 취업 실태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에 관한 사항
3.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에 관한 사항
4. 경력단절여성등의 교육훈련 실태에 관한 사항
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제3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실시기관) 법 제12조 및 제15조제2항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말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2.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4조(직업교육훈련 실시기관) 제13조제1항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말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2.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5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6조(중앙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6조제2항제8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말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원센터의 인력사항, 명칭,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원센터를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센터 폐지·운영정지 신고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현황	명칭				
	소재지				
	종류/면적 상담실 m², 사무실 m², 강의실 m², 실습실 m², 기타 m² (총 m²)				
인력현황	총원	센터의장	상근하는상담전담자	기타	
	명	명	명	명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또는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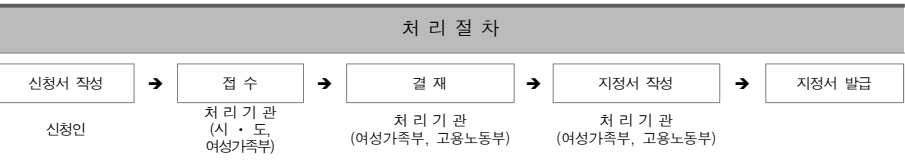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신청인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합니다)	



제 호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서

1. 센터명 :

2. 운영기관명 :

3. 소재지 :

4. 법인(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5.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6. 센터장 성명: (생년월일:)

위 시설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월일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직인

210mm×297mm 백상지(150g/㎡)

- 8 -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 대표자 [] 지원센터장 [] 명칭 [] 소재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고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사항	시설의 명칭				
	지원센터장의 성명			변경 연월일	
	구분	대표자 성명	지원센터장의 성명	명 칭	소 재 지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 사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 대표자 [] 지원센터장 [] 명칭 [] 소재지)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 폐지
[] 운영정지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 현황	명칭			지원센터장의 성명	
	소재지				
폐지 연월일			운영정지기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 폐지, [] 운영정지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연 락 처	(02) 2100 - 6202